

1. 하도급 거래 손해배상 산정의 절차¹

(1) 수급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가공의뢰 계약

NO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범위
1	제 3자에게 원사업자 재산 대여/판매	재산가격의 2배 상당액
2	허용 LOSS율 초과, 가공상의 하자로 반품되어 재사용 불가능	재산가격 및 원사업자가 지출한 운반비용 (납품, 반품 비용)
3	원사업자 요구에 위배하여 가공 실패	가공에 실패한 제품상당의 재산가격
4	재산의 반환의무 이행 지체 / 이행불능 (부도, 청산 등)인한 피해 발생	재산가격/원사업자의 회수에 따른 지출비용
5	원사업자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난, 화재, 강제집행, 보전처분, 체납처분 등)	재산가격
6	생산 거부, 사전 동의 없는 계약 중도 해지	임가공비 상당액(손해배상 사유 발생 시점 이전 3개월 월 평균)
7	제조물 결함 발생인한 손해 발생 (제품 생산~납품시점까지의 과정)	손해배상금 및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
8	기타 계약 위반 인한 피해 발생	손해액 범위내에서 원사업자 산정 금액
9	영업비밀 유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판매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및 분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천재지변인한 원사업자의 재산에 피해 발생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

※ 재산 : 원사업자의 재산 / 원사업자에게 납품된 제품 상당의 재산 제외함

※ 가격 : 원부자재(구입가) / 반성품, 반제품, 완제품(제조원가)

¹ 롯데제과 하도급거래및공정화관리규정 제11조 ‘하도급 거래 손해배상 산정의 절차’

② 완제품 및 물품제조의뢰 계약

NO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범위
1	제 3자에게 원사업자 재산 대여/판매	재산가격
2	재산의 반환의무 이행 지체 / 이행불능 (부도, 청산 등)인한 피해 발생	재산가격
3	원사업자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난, 화재, 강제집행, 보전처분, 체납처분 등)	재산가격
4	생산 거부, 사전 동의 없는 계약 중도 해지	물품제조/매입비 상당액(손해배상 사유 발생 시점 이전 3개월 월 평균)
5	제조물 결함 발생인한 손해 발생 (제품 생산~납품시점까지의 과정)	손해배상금 및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
6	기타 계약 위반 인한 피해 발생	손해액 범위내에서 원사업자 산정 금액
7	지적재산권 등을 원사업자 승낙 외 사용, 통상실시권 사전 미통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판매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및 분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8	영업비밀 유지 의무 위반	모든 손해액 및 분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천재지변인한 원사업자의 재산에 피해 발생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

※ 기계설비 재산가격:최초취득가, 필요시 감가 반영(외부 감정비 수급업자 부담)

(2) 원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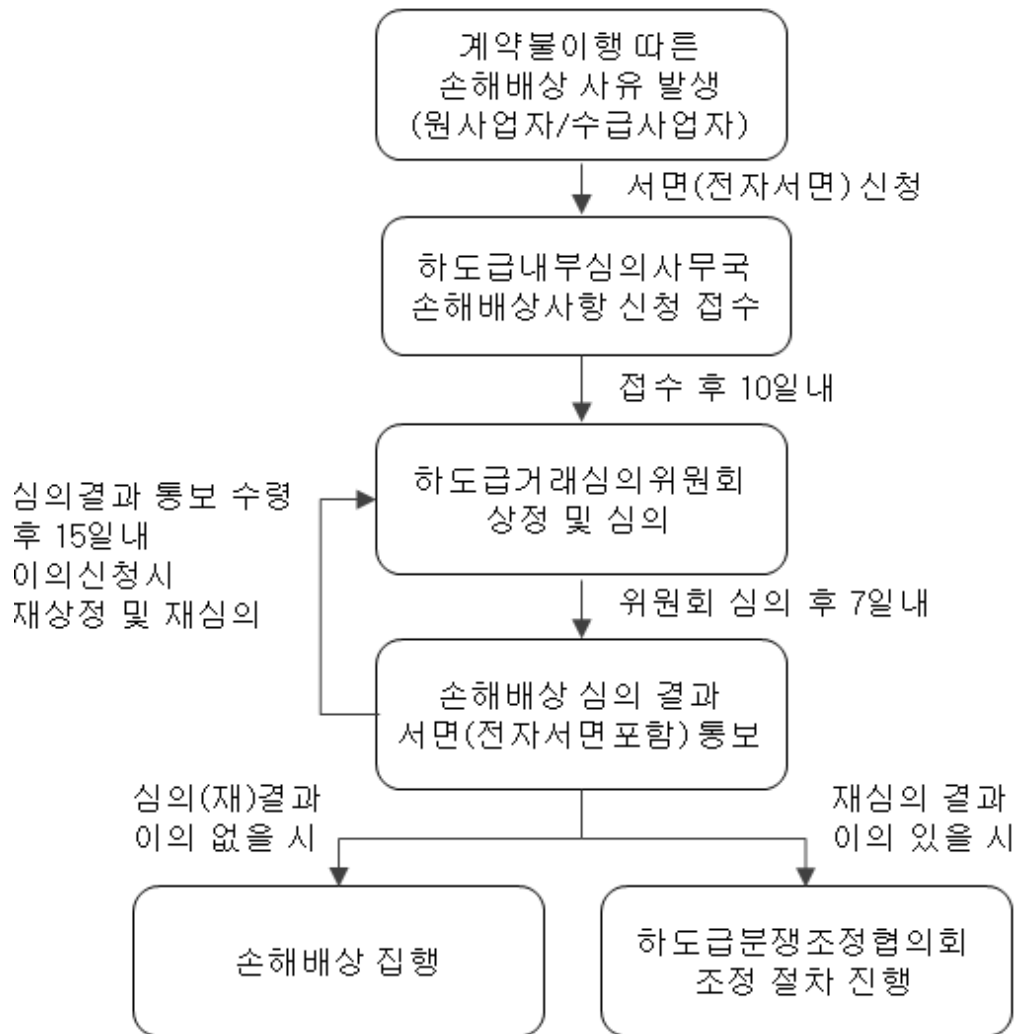
NO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범위
1	목적물 수령 거부/ 거래정지 3개월 미만 통보	납품대금 상당액(손해배상 사유 발생 시점 이전 3개월 월 평균)
2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납품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및 분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3	기타 계약 위반 인한 피해 발생	손해액 범위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산정한 금액 배상

롯데제과(주)

(3) 손해배상 사유 발생시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를 산정하여 하도급내부심의사무국에 심의신청을 접수하며, 하도급내부심의위원회는 접수 후 10일내 하도급거래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개최한다. 심의 결과는 7일내 서면으로 파트너사에 통보하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내 서면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하도급거래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하여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4) 하도급거래 손해배상 절차상 통지 및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자서면 포함)

< 손해배상 산정 절차(표) >



2. 하도급거래 손해배상 이의 신청

(1) 하도급거래 손해배상의 신청 및 이의 신청의 방식은 서면, 전자서면 및 롯데제과 홈페이지 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http://www.lotteconf.co.kr/Charlotte/inquiry.asp?mn=040500>)

(2) 기타 하도급거래 손해배상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롯데제과 협력업체 지원 조직인 ‘준법경영팀’ 담당자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준법경영팀 업무담당자 연락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준법경영팀	황자영	jayhwang@lotte.net
	김성민	sminiga@lotte.net
	강서일	seoilene@lotte.net

※ 준법경영팀 HOT-LINE : 02-2670-6983